

#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22.(화)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4. 4. 9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4. 4. 10
- 라. 상정일자 : 2014. 4. 22 (제21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조인권 정책기획관
  - 검토보고 :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  - 질의 및 토론
  -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유비쿼터스<sup>1)</sup>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<sup>2)</sup>사업협회의 기능 및 구성, 회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5조)
-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(안 제6조)

1) 유비쿼터스 (Ubiquitous) : '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'는 뜻으로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

2) 유비쿼터스 도시(U-city) :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시티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시티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유시티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 
▶ 「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편」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제정 조례안은 「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市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(이하 “U-city”) 건설사업을 촉진하고자 U-city 관련 사업(실시)계획 및 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을 심의하는 ‘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’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
- 송도·영종·청라 신도시와 원도심 등의 인천 관내 전역을 U-city로 조성하는 추진전략이 포함된 「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용역」이 지난해 말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U-city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 구성되는 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”가 ‘U-city 기술’, ‘U-city 기반시설’, ‘U-city 서비스’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
-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U-City 모델지구로 인정받은 상황이고, 경제자유구역청 조직내에 U-City 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도 유비쿼터스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
- 한편, 정보화 관련 조례내용 특성상 조문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‘용어 정의’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,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심의사항과 내용이 부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고, ‘당연직 위원’ 위촉대상이 구체적으로 직위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
- 아울러, 「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시」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‘성별을 고려하여’ 문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## < 홍성욱 위원 >

-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언제 수립했나?  
⇒ '13.12.31.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승인받았고, 상위 법률은 2008년 3월에 조례 제정되었음
- 도시계획 수립전에 이번에 구성하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?  
⇒ 법률 제24조에 의거 U-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이후 U-건설사업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, 이번 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님
- 사업논의를 하는 자리에 사업시행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?  
⇒ 법률에 사업시행자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

##### < 이강호 위원 >

-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을 관내 전체로 확대·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진행? 개발사업자도 재원을 부담하나?  
⇒ 전액 시비사업은 아니고, 수익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수도요금처럼 사용여부에 따라 시민이 부담할 수도 있음
- 2008년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. 원도심 지역에도 이런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##### < 최용덕 위원 >

- 해당 사업건이 구체화된 이후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?  
⇒ 우리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국토부에 이미 승인받았고, 개별 사업건의 시행은 미정으로 차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임

- 협의회 위원이 25명 이내인데 유비쿼터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을까? 처음 시행하는 협의회인 만큼 식견있는 전문가 구성이 얼마나 될까 의문임
- ⇒ 동 법률 제정 이전에 경제청에서 U-사업이 진행되고 있음.  
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에 노력하겠음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4명(이용범, 차준택, 최용덕, 홍성욱 의원)

##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(재석위원 4명 : 찬성 4명)

### ❖ 수정가결 내용

- 다음 조항을 제2조로 신설·삽입하고 제2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는 제3조로 한다.  
「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‘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」로 하고
- 제6호 「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」중 ‘기반시설’을 ‘건설사업’으로 수정한다.
- 제3조(구성)을 제4조로 하되 제3항 중‘특별위원’을 삭제하고, ‘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, 관계기관(소방안전본부, 경찰청, 교육청) 등의 담당업무 과장’을 ‘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의 장’으로 수정하고  
제2호 “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(운영사업 포함) 시행자”는 “사업시행자”로 하고, 제4항을 삭제한다.

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## 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수정안 1부.  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  
3.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1부.

##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다음 조항을 제2조로 신설·삽입하여  
「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‘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」 로 하고
- 제2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는 제3조로 하되  
제6호 「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」 중 ‘기반시설’을 ‘건설사업’으로 수정하며
- 제3조(구성)을 제4조로 하되  
제3항 중 ‘특별위원’을 삭제하고, ‘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, 관계기관(소방안전본부, 경찰청, 교육청) 등의 담당업무 과장’을 ‘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의 장’ 으로 수정하고  
제2호 “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(운영사업 포함) 시행자”는 “사업시행자”로 하고, 제4항을 삭제하여, 제5항은 제4항으로 제6항은 제5항으로 하며
- 제4조는 제5조로, 제5조는 제6조로, 제6조는 제7조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생략)</p> <p>(신 설)</p> <p>제2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유비쿼터스도시<u>기반시설</u>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3조(구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, 특별위원으로 구분하고, <u>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 및 관련 부서, 관계기관(소방안전본부, 경찰청, 교육청) 등의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(운영사업 포함) 시행자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④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 <u>한하여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1. 「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</p> <p>2. 해당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시행자</p> <p>3.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4조 (생략)</p> <p>제5조 (생략)</p> <p>제6조 (생략)</p>	<p>제1조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‘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제3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1 ~ 5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6 ----- <u>건설사업</u> -----</p> <p>7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4조(구성)</p> <p>① ~ 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위촉직 위원</u> ----- ----- <u>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의 장</u> ----- -----</p> <p>1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2. 사업시행자</p> <p>3. ~ 5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삭제)</p> <p>④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7조 (제정안과 같음)</p>

#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‘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2.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3.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4.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5.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
6.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의 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
2. 사업시행자
3. 도시계획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(정보통신, 정보시스템, 기타) 전문가
4. 유비쿼터스도시건설(운영 포함)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거나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
제5조(회의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.

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유비쿼터스도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.



제6조(관계기관의 협조)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협의회 운영)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, 관련기관·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